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다200363 판결 [보증채무금]

---

##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판결 선고 2015. 12. 24

원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나1909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2015. 9. 1. 원고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은 2008. 4. 3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간을 2009. 4. 23.까지로

정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2009.4. 23. 대출기간을 2010. 4.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A

는 2008. 4. 30. 피고와 보증한도액을 2억 원, 보증기간을 2008. 4. 24.부터 2009. 4.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2009. 4. 23.경 다시 피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2009. 4. 24.부터 2010. 4.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③ A가 폐업을 함으로써 2010.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원고와 A 사이의 2009. 4. 23.자 추가약정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인 최초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의 상환기간만을 연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 담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 담보하는 채무는 동일한 채무인 점,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수출신용보증약정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A와 연대보증인인 C의 서명과 날인을 제외하고 는 '신용보증한도', '대출취급기관',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등 모든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의 구체적인계약 내용이 동일하였기 때문인 점, ③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 )자로 발급된 구보증서번호( )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 독립적인 별개의 보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A 사이의 2009. 4. 23.자 추가약정에 대응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보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 B이 이미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신규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적전 신용보증 보상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 및 그 종속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보증일 뿐 독립적인 별개의 보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은행인 원고와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용하는 수출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서 발급과 이에 관련된 신용조사 등 부수적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한 사실, ② 협약제5조는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피고와 원고 간에 정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 시행약정'(이하 '시행약정'이라 한다)은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협약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원고는 시행약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가 시행약정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시행약정 제8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신규보증금 금지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호는 '연대보증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거나 금융기관 취급점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선적전 신용보증 보상심사 기준'에 포함된 '선적전 신용보증 수탁보증 보상심사 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3. 가. 항은 신규보증금지 대상을 정한 시행약정 제8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보증

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전액 및 그 종속채무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당시 시행되던 시행약정은 연대보증인의 입보기준에 관하여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과 과점주주인 이사 1인 등 모두 2명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⑥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당시 A의 대표이사 C와 함께 B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 ⑦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체결 이후인 2009. 3. 1. 피고가 시행약정을 개정함으로써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1인만 연대보증하면 되고, 그 외의 연대보증인은 입보할 필요가 없게된 사실, ⑧ 위 시행약정 개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당시에는 위 개정 시행약정에 따라 A의 대표이사 C만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B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 ⑨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는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도 새로 발급된 사실, 10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던 B이 이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라기보다는, 피고가 이를 이유로 그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는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용보증서도 새로 발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보증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인 점( 대법원 2007.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참조), 시행약정에서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자가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피고가 그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한 취지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사실상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에는 개정된 시행약정에 따라 대표이사 C만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B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아닌 B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실현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정한 특약으로 인해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책임을 성립하는지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위와 같은 피고의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자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시행약정에 규정된 피고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용보증약정 및 면책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